

지급명령신청서

채 권 자 김가은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00, 000동 000호

채 무 자 박시우

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00, 000동 000호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4,80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9,7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2,100원)

청 구 원 인

1. 보증 약정과 주채무

채권자는 2026. 2. 3. 채무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계약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고, 채무자는 2026. 5. 31.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. 보증 약정서에는 주채무자, 보증인 및 보증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.

2. 주채무의 미이행과 보증인의 변제

채무자가 상환일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26. 6. 10. 대출기관에 보증채무 금 4,800,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. 이체확인증과 변제영수증에는 변제일, 지급액 및 수령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3. 구상금 청구와 미지급

채권자는 2026. 6. 17. 채무자에게 위 변제 사실을 알리고 구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, 채무자는 현재까지 금 4,800,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보증서 또는 보증 약정서 1통
2. 주채무 대출약정서 및 상환내역 1통
3. 대출기관의 보증채무 청구서 1통
4. 대신 변제 이체확인증 및 변제영수증 1통
5. 구상금 지급 요청 메시지 1통

2026. 8. 7.

채권자 김가온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